

영주시 공고 제2023 - 1007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중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영 주 시 장



##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농축산물의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 이외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추가(안 제1조)
- 나. 도매시장가격의 단서 조항 추가 및 최저가격의 도매시장가격 조사기간 삭제(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
  - 인삼, 약초 등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지역농협의 자료 및 주산지 시·군의 거래가격 등을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 기금의 용도에 생산비 차액 지원 이외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추가  
(안 제5조 제2호)
- 라. 위원회 구성 관련 기금을 출연한 농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안 제7조 제4항)
- 마. 지원대상 농산물 확대 및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동일 수준으로 개정(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지원대상 농축산물에 인삼, 양파, 고구마, 감자를 추가
  -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기준과 비교하면 농산물은 6.6배, 축산물은 15배 차이 발생  
(현행) 농산물은 6,600㎡ 이내, 한·육우는 30두 이내, 돼지는 1,500두 이내, 닭은 15,000수 이내  
(개정) 농산물은 7,000㎡ 이내, 한·육우는 14두 이내, 돼지는 70두 이내, 닭은 7,000수 이내
- 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에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5백만원 이하) 신설(안 제16조 제3항)
- 사. 지원대상에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역농협에 직접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17조 제2항)
- 농산물 수확기 홍수 출하 예방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농협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 유도

###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8월 16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 :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  
영주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
- FAX : (054)639-5877 송신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 연락전화 : (054)639-7311, 7313
- E-mail : powerkorean@korea.kr,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차액 지원과 가격안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외된 품목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제3호 중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을 “도매시장가격”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결사항

제7조제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 기금을 출연한 농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로, “농업정책팀장”을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 3. 영주시의회의원

제8조제1호 중 “기금운용”을 “기금운영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결정

#### 3.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농업정책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수박”을 “수박, 양파, 고구마, 감자, 인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600제곱미터”를 “7,000제곱미터”로, “30두”를 “14두”로, “1,500두”를 “70두”로, “15,000수”를 “7,000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액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원대상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차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계통 출하한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계통조직인 관내 소재하는 농축산업협동조합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을 “도매시장가격”으로,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신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2.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결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5명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농업정책과장, 기금을 출연한 농협에서 추천한 사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영주시의회의원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 간사는 농정기획팀장---

제8조(위원회 기능) -----  
-----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3. · 4.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생략)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

-----.

1. 기금운영 및 결산--
2.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결정
3.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3명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

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시 관내  
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포  
도, 복숭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약초(계통출하조직에서 약  
초로 분류되는 품목에 한한다),  
한우, 육우, 돼지, 닭(산란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  
· 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  
내로,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 1,500  
두 이내로, 닭은 연간 출하두수  
15,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농  
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  
다.

<신설>

-----  
-----  
--.

1. (현행과 같음)

2. ----- 농정기획팀장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  
-----  
----- 수박, 양파, 고구마,  
감자, 인삼-----  
-----  
----- . -----  
-----  
-----.

② ----- 7,000  
제곱미터 -----  
----- 14두 -----  
----- 70두 -----  
----- 7,000수 -----.

③ 차액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5백만원 이하로 한  
다.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신 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 략)

제17조(지원대상) ① 차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계통 출하한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계통조직인 관내 소재하는 농축산업협동조합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 도매시장가격-----  
-----  
-----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주요내용	<p>※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p>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